#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65

발의연월일: 2020. 9. 25.

발 의 자 : 추경호 · 김선교 · 황보승희

성일종 · 조해진 · 서범수

이종배 • 김정재 • 김태호

서일준 · 임이자 · 정진석

김형동 • 윤창현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에 따라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그간 정부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세제 지원이 2020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제지원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제96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0년 6월 30일"을 "2021년 6월 30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	①
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	
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	
일부터 <u>2020년 6월 30일</u> 까지	2021년 6월 30일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	
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	
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